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」에 따르면,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하여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,

국제곡물가격 상승 및 국내 작황부족으로 인한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늘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,467톤에서 24,467톤으로, 매니옥 전분의 시장접근 물량을 현행 14,300톤에서 27,300톤으로 늘려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특기할 사항 없음

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0703란, 0711란 및 0712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0703		양파·샬롯(shallot)·마늘·리크(leek)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(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)	14,467 톤	10,000 톤	24,467 톤
070320		마늘			
070320	10 00	껍질을 깎 것			
070320	90 00	기타			
0711		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(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			
071190		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			
071190	10 00	마늘			
0712		건조한 채소(원래 모양인 것, 절단한 것, 얇게 썬 것, 부순 것,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, 더			

071290			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)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 물			
071290	10	00	마늘			

별표 중 1108.1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108			전분과 이눌린(inulin)			
1108	1		전분	2,400톤	24,900톤	27,300톤
1108	14		매니옥(manioc)[카사바 (cassava)]으로 만든 것			
1108	14	1000	식품용			
1108	14	9000	기타			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시한)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2조(증량물량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증량물량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

정에 따른다.